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가치평가 활용영역 확대방안에 관한 소고*

장재원**, 이명희***

〈목 차〉

- | | |
|------------------------------|-----------------------------------|
| I. 서론 | VI. 지식재산 가치평가 활성화
저해요소 및 해결 방안 |
| II.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활용
가능 영역 | 1. 지식재산 가치평가 활성화
저해요소 |
| 1. 목적별 지식재산 가치평가 | 2. 지식재산 가치평가 활성화
저해요소에 대한 해결방안 |
| 2. 대상별 지식재산 가치평가 | |
| III. 우리나라 지식재산
가치평가 활용 현황 | IV. 결론 |
| 1. 지식재산 가치평가 활용 영역 | |
| 2.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수행 | |

◆ 투고일자: 2023-12-08 심사완료일: 2023-12-18 게재확정일자: 2023-12-26

* 이 논문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수행한 기초연구과제 “지식재산가치평가 활용
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2023년)를 기초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 제1저자, 법률사무소 해화 대표변호사/변리사.

*** 교신저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선임연구원/법학박사.

I. 서론

지식재산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지식재산 유통이 촉진되어야 하며, 지식재산유통 촉진을 위해서는 시장에서 활용 가능한 지식재산의 가치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허의 경우를 예로 들면, 기술은 그 개발에서부터 거듭된 개량, 그리고 인접 분야 기술과의 결합과 상호운용을 통한 사업화의 성공까지 모든 과정에서 수많은 기업들 간의 분업과 기술거래를 필수적으로 야기한다. 그런데, 특허제도의 목적은 새롭고 유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기술적 사상에 대하여 그 개발자 또는 그 승계인이 기술적 사상을 시장에서 구현하여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일정 기간 배타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의 발전 속도를 더욱 빨라지게 하려는 것이므로¹⁾, 특허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거래 활성화 방안을 정비하여 기술개발이 실제 경제적 이익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 가능성을 시장 참여자들에게 보여주어야만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다양한 사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아직까지는 지식재산 가치평가가 지식재산 담보대출, 보증, 투자 등의 지식재산 금융 목적의 가치평가 외에 다른 영역에서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법정 사건에서 보더라도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산정 사건, 발명의 가치 평가가 쟁점인 직무발명 사건, 기술기업의 회생·파산 등 사건(계속기업 가치와 청산가치의 산정), 지식재산권의 매매, 실시 등 거래에 관한 민사사건에서 모두 지식재산 가치평가가 쟁점이 된다.²⁾ 사정이 이러함에도 지식재산 가치평가나 실시료율 산정의 어려움으로 실무상 어

1) 특허법 제1조.

2) 법원행정처, 「지식재산권의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정책연구용역 제안요청서, 2022.6., 1면.

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혼 관련 가사사건에서는 부부명의의 모든 재산을 현금으로 환가하여 재산분할하는 과정에서 지식재산은 아예 환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식재산 가치평가가 그 필요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용되지 못하는 것은 특히 특허, 디자인, 상표 등 산업재산권은 각각 다른 요소³⁾에 의해 영향을 받기때문에 기술 내용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관련 업계의 현황분석과 미래예측, 영업매출과 비용계산 등의 전문성과 함께 해당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필요로 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⁴⁾ 또한 가치에 대한 평가는 현황평가가 아닌 미래에 발생할 이익에 대한 조건부 평가인데, 그 조건에 대한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로 가치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신뢰성 부족으로 가치평가의 활용영역 확장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수행 및 활용을 저해하고 있는 원인을 분석하고 그러한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함으로써 지식재산 가치평가가 그 시행 가능한 모든 분야에서 보다 활발히 활용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활용 가능 영역

1. 목적별 지식재산 가치평가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목적 또는 용도는 다양하다. 세계지식재산권 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는 지식재

3) 일예로 제품의 특허권과 디자인이 모두 매출에 영향을 미치거나, 광고 등이 산업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이 있다.

4) 김민정 기자, [단독] 대법원, 지식재산권 가치평가 기준 도입 검토…“기술이 가진 가치 제대로 평가”, 조선 비즈 2022.6.27.자 기사. ;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2/06/27/HKWLYOA4DNG2ZNUVVM2FEDVMU/, 최종접속 2023.11.20.

산 가치평가의 목적을 크게 지식재산 거래(Transaction), 지식재산권 집행(Enforcement of Right), 내부적 활용(Internal Use), 기타(Others, 세무, 파산/청산 등)로 분류하고 있다.⁵⁾ 지식재산 거래분야에서는 지식재산의 라이선싱과 매각 또는 구입, 기업의 인수합병 또는 분할시에 가치평가가 필요하고, 지식재산 집행과 관련해서는 지식재산권 침해시 손해배상액의 산정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또한 기업에서 R&D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거나 자금조달을 위한 담보와 같은 금융 목적 등 기업 내부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식재산의 가치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술가치평가의 목적을 아래의 표와 같이 나누고 있다.

〈표 1〉 기술가치평가의 목적과 용도

목 적	용 도
이전·거래	기술의 매매, 라이선스 가격 결정
현물출자	기술 또는 지식재산권의 현물출자
금융	기술의 담보권 설정 또는 투자유치
전략	기업의 가치증진, 기술상품화, 분사(spin-off), 경기 전략적 경영계획 수립
세무	기술의 지증, 처분, 상각을 위한 세무계획 수립 및 세금납부
소송	지식재산권의 침해, 채무부이행, 기타 분쟁 관련 소송 수행
청산	기업의 파산, 또는 구조조정에 따른 자산평가, 채무상환계획 수립
기타	특례상장 등

* 출처: 기술평가 실무가이드(산업통상자원부, 2021)

이 외에도 지식재산을 보유한 기업이 주요 사업에 지식재산을 활용하지 않거나 또는 라이선싱아웃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한 지

5) WIPO, IP Valuation ;

<https://www.WIPO.int/tools/en/gsearch.html?cx=016458537594905406506%3Ahmturfvwzzq&cof=FORID%3A11&q=ip+Valuation#gsc.tab=0&gsc.q=ip20Valuation&gsc.page=1>, 최종접속 2023.11.20.

지식재산을 공여 또는 기부하는 것이 고려되기도 하는데, 지식재산기부에는 상당한 세제혜택이 부여되기 때문에 이러한 세제혜택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식재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대상별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고려 사항

(1) 지식재산 가치평가 관련 법령

가치평가의 대상이 되는 지식재산권은 특허권, 상표권 등 전통적인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콘텐츠 및 소프트웨어, 데이터 분야에서도 가치평가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관련 가치평가 기법의 개발 및 평가기관 지정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식재산에 대한 평가와 평가 범위 등에 관하여는 여러 법령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우선 국가지식재산기본법 제27조 제1항은 “정부는 지식재산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 평가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가치의 평가 기법 및 평가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기법 및 평가 체계가 지식재산 관련 거래·금융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발명진흥법 및 그 시행령에도 가치평가에 관한 내용을 두고 있는데, 발명진흥법 제2조는 산업재산권의 경제적 가치 및 기술적 우수성을 가액·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평가하는 업을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고,⁶⁾ 동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는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등을 정하고 있다. 또한 기술이전법⁷⁾ 및 그 시행령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⁹⁾ 등에서 지식재산의 가치평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그 내용은 주로 지식재산권(기술) 평가기관 지정과 평가인력 양성 등에

6) 발명진흥법 제2조 제9호 다목.

7) 기술이전법 제13조 및 제32조, 제34조 및 제35조.

8) 기술이전법 시행령 제32조.

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관한 사항이다. 이 밖에도 기술보증기금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외국인투자촉진법, 공간정보산업진흥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등에서 산업재산권과 이에 준하는 (문화)기술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2) 평가 대상별 고려 사항

가)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중에서는 특허권과 상표권의 감정평가가 비중과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5개년간 현황¹⁰⁾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지식재산권의 감정평가시장 중 특허권의 규모(비중)는 약 21~35억 원(64.5~76.3%), 상표권의 규모(비중)는 약 7~12억 원(17.6~31.5%)이고, 특허권과 상표권을 더한 비중이 90.5%(2018년)~96.0%(2020년)를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는 디자인권, 저작권, 실용신안권, 서비스표권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지식재산의 가치평가에서는 산업재산권별 특징을 감안하여야 하는데, 기술수명과 사용 중인 기술인지 또는 불사용 기술인지 여부 등이 가치평가 요소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특허 기술 및 발명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대체 기술의 등장으로 기술이 진부화되며 경제적 수명이 짧아져서 가치가 하락한다. 이에 비해 상표는 지적창작물이 아니라 표지의 선택이자 출처표시의 수단으로 이용되므로 사용기간이 길수록 가치가 상승하며, 상표 사용자가 변경되면 가치변동이나 가치하락이 크다. 또한 상표는 시장에서 사용되어야 가치가 형성되므로 미사용 상표의 가치는 제로(0)에 가깝다. 특히 상표는 존속기간이 반영구적이며 사용 전에는 미래 현금흐름 추정이 불가능한 점 등이 상표의 가치평가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10) 한국부동산연구원, 지식재산권 감정평가기준 마련 연구, 2022, 25~30면.

나) 콘텐츠

콘텐츠 제작을 위한 필요 자금확보를 위해서도 가치평가가 필요하며, 콘텐츠의 가치평가는 콘텐츠 기업에 대한 가치평가와 콘텐츠 프로젝트에 대한 가치평가로 구분한다. 영화나 뮤지컬의 경우에는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와 가치평가가 일반적이며, 게임이나 애니메이션은 기업에 대한 투자와 가치평가가 일반적이다.¹¹⁾

일본의 경우 콘텐츠에 대한 가치평가 항목을 기획내용, 제작계획, 유통계획, 프로모션 계획, 회수계획, 실적 데이터, 외부요인, 계약 등 8가지로 수립하고 있다.¹²⁾

〈표 2〉 일본의 콘텐츠 가치평가 항목

평가항목	세부요소
기획내용	원작, 각본, 프로듀서, 감독 등
제작계획	제작회사의 능력, 제작비, 신용리스크 등
유통계획	배급, 흥행, 비디오화, 상품화 등
프로모션 계획	광고선전비, 광고선전매체 등
회수계획	배급, 흥행, 비디오화, 해외판매, 상품화, 주요상영관 가동률, 회수에 관한 현금흐름 등
실적데이터	원작, 유사작품(흥행실적) 등
외부요인	경합작품, 경합하는 이벤트, 기후, 계절요소, 경기 등
계약	감독, 각본가, 캐스트 등의 권리 이용허락, 권리의 존재, 권리의 보증 등

다)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는 일반 제품에 비해 기술수명이 짧고 한번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및 업그레이드, 유지보수가 발생되는데 이러한 특징들이 소프트웨어의 가치평가에 반영되어야 한다.

-
- 11) 조용순, “콘텐츠 제작을 위한 자금조달 관련 법률에 대한 검토”, 「정보법학」, 제23권 제2호, 정보법학회, 2013, 257면.
 - 12) 일본 지적재산추진계획 및 콘텐츠가치·비즈니스모델에 관한 연구조사회, 콘텐츠 평가 비즈니스모델에 관한 조사연구 보고서, 2004.

일반 제조업과 달리 소프트웨어 기업은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유형 자산이 거의 없는 대신에 소프트웨어와 프로그래머(개발자)가 기업의 재산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의 기술가치평가나 기업의 가치평가에 있어도 개발자 인건비, 개발활동에 따른 비용 등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사업성 요인으로 취급해야 하고 회계상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¹³⁾

라) 데이터

최근 제정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산업법’이라 한다)¹⁴⁾은 데이터에 관한 객관적인 가치평가를 통해 데이터가 관련 거래·금융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 가치의 평가기법 및 평가체계를 수립하고, 데이터 가치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가치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¹⁵⁾ 이에 따라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이 마련되었고, 데이터 가치평가기관으로 기술보증기금, 나이스디앤비, 신용보증기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4개 법인이 지정되었다.

데이터 가치평가는 시장에서 유통, 거래되는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 등급, 점수등으로 평가하는 작업으로, 특히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보유한 데이터는 무형자산으로서 투자유치, 금융지원 등 기업 경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무형자산 기업회계기준’ 상 데이터 자산은 무형자산의 유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데이터가 가치평가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가치평가 결과가 재무제표에도 자산으로 계상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가 ‘무형자산 기업회계기준’에서 규정

13) 파이낸셜뉴스, [이동규의 컨버전스] 소프트웨어 가치평가의 특이점 인정해야 수당활련, 2023.9.3.자 기사. ;

<https://www.fnnews.com/news/202309012151461496>, 최종접속 2023.11.20.

14) 법률 제18475호, 2021. 10. 19., 제정, 시행 2022. 4. 20.

15) 데이터산업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

하는 무형자산에 해당되어야 한다. 따라서 평가된 데이터의 가치를 기업의 자산으로 인정하기 위한 관련 제도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¹⁶⁾ 또한 향후 평가대상 데이터의 특성과 시장의 상황적 요인을 고려한 적절한 평가기법 개발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Ⅲ. 우리나라 지식재산 가치평가 활용 현황

1.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활용 영역

지식재산의 가치는 그 지식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주요 자산 가운데 하나일지라도 그 기업가치를 이루고 있는 요소의 하나로 재무제표 상에 그 실제 가치대로 기재하기가 어렵다.¹⁷⁾ 지식재산 가치를 재평가하여 재무제표 상에 그 실제 가치가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¹⁸⁾ 기업회계 실무에서는 지식재산 가치를 재평가하여 재무제표 상에 계상된 가액을 변경하는 경우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지식재산 가치평가는 주로 지식재산가치를 포함하는 총기업가치를 기반으로 투자를 유치하거나 기술(특허권)을 담보로 제공하여 융자를 받아 사업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지식재산금융 영역에서 수행되어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식재산거래 목적의 지식재산 가치평가는 거래당사자 모두가 그 거래대상 지식재산의 가치를 매우 높게 예상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 가치평가 비용 부담 문제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수행되기 어렵

16) ifs POST, '데이터 가치 평가기관' 지정의 의미와 과제. ;

https://www.ifs.or.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53286, 최종접속 2023.11.20.

17) 일반기업회계기준 11.7(2), 11.11(1) 및 (2). 11.16, 11.17부터 11.19, 11.20(1)부터 11.20(6).

18) 자산재평가법 제6조 제4호의 해석 상 특허권 · 실용신안권 · 의장권 또는 상표권은 최소한 자산재평가의 대상인 자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다.¹⁹⁾ 내부관리 목적의 지식재산 가치평가도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식재산 소송에서도 지식재산권리자는 지식재산 침해행위로 인하여 그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을 그의 손해액으로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²⁰⁾ 지식재산 권리자가 그의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굳이 비용을 들여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수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2.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수행

(1) 지식재산 가치평가 수행기관

발명등의 가치평가를 위해 특허청장이 지정한 평가기관²¹⁾과 기술평가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평가기관²²⁾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3〉 발명 등의 평가기관 지정 현황²³⁾

연번	평가기관	비고	연번	평가기관	비고
1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공공	12	(주)나이스평가정보	민간
2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공공	13	(주)이크레더블	민간
3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공공	14	특허법인 도담	민간
4	기술보증기금	공공	15	(주)케이티지	민간

19)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FAQ 게시관, “기업체에서 기술의 가격이 얼마나 되고 물어봅니다. 답변은?”; https://industry.unist.ac.kr/faq_type/기업체에서-기술의-가격이-얼마나고-물어봅니다-답, 최종접속 2023.7.20.

20) 특허법 제128조 제4항, 상표법 제110조 제3항, 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제3항 등 참조.

21) 발명진흥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지정한 “발명 등의 평가기관”에 의한 평가를 말한다.

2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기술평가기관”에 의한 평가를 말한다.

23) 국가지식재산거래플랫폼 IP-Market, ; <https://ipmarket.or.kr/ko/valuation/agency/>, 최종접속 2023.7.17.

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공공	16	한국기업데이터(주)	민간
6	한국산업은행	공공	17	(주)나이스디앤비	민간
7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공공	18	(주)국민은행	민간
8	신용보증기금	공공	19	농협은행 주식회사	민간
9	(주)웹스	민간	20	(주)우리은행	민간
10	특허법인 다래	민간	21	유미특허법인	민간
11	특허법인 다나	민간	22	주식회사 주원아이피	민간

〈표 4〉 기술평가 기관 지정 현황²⁴⁾

연번	평가기관	비고	연번	평가기관	비고
1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공공	19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공공
2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공공	20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공공
3	기술보증기금	공공	21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민간
4	신용보증기금	공공	22	(주)나이스디앤비	민간
5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공공	23	(주)다래전략사업화센터	민간
6	중소기업진흥공단	공공	24	(주)에스와이피	민간
7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공공	25	(주)웹스	민간
8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공공	26	(주)이크레더블	민간
9	한국기계연구원	공공	27	(주)주원아이피	민간
10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공동	28	(주)케이티지	민간
11	한국발명진흥회	공동	29	(주)티밸류	민간
1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공	30	나이스평가정보(주)	민간
1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공	31	유미특허법인	민간
14	한국산업은행	공공	32	특허법인 다나	민간
15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공공	33	특허법인 다래	민간
16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공공	34	특허법인 도담	민간
17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공공	35	한국평가데이터(주)	민간
18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공공			

24)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 참조. ;

<https://tb.kibo.or.kr/ktbs/tech/tectrsinu/tecTrsInuList.do>, 최종접속 2023.7.17.

(2)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정부 지원 사례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중앙정부의 가치평가 사례로(특정 기술 한정 지원 사례 제외), 우선 특허청은 현재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특허청장 지정 발명의 평가기관을 통해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수행하고 금융기관의 투자 또는 융자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를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지식재산금융 연계 평가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다.²⁵⁾

다음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매년 일정 예산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지정 기술평가기관을 통해 보증용 또는 투자용 기술평가를 수행하면 그 기술평가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증용 기술평가 비용지원사업” 및 “투자용 기술평가 비용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²⁶⁾

중소벤처기업부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보유기술에 대하여 매년 1억 원 내외의 예산 한도 내에서 특허청장 지정 발명의 평가기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지정 기술평가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약 20건 정도의 기술이전·거래용 기술가치평가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기술거래 연계 민간기술 가치평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²⁷⁾

25) 특허청 홈페이지. ; “정책/업무→지원시책→지식재산권금융지원→지식재산금융 연계 평가지원” 경로의 페이지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https://www.kipo.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0353>, 최종접속 2023.7.17.

26)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 “예산·법령→고시·공고→공고” 경로의 페이지에서 “비용지원사업”을 검색어로 지정하여 검색을 수행하면 기술평가 비용지원사업으로서 보증용 및 투자용 기술평가에 대한 지원사업만이 공고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공고게시판의 인터넷 주소는 다음과 같다. ;

http://www.motie.go.kr/motie/ms/nt/announce3/bbs/bbsList.do?bbs_cd_n=6, 최종접속 2023.7.18.

27) 중소기업벤처부 중소기업 성공 길잡이 기업마당 홈페이지. ; “정책정보→지원사업공고” 경로의 페이지에서 “가치평가사업”을 검색어로 지정하여 검색을 수행하면 가장 최근의 사업 시행계획 공고로서 “2023년 2차 기술거래 연계 민간기술

(3) 지식재산 가치평가 데이터의 수집 등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실제 지식재산거래 사례가 한 곳에 충분히 축적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²⁸⁾ 사인간에 이루어지는 지식재산의 거래사례가 그 거래조건과 함께 일반에 공개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데이터베이스화 가능한 지식재산거래사례는 한국발명진흥회의 국가지식재산거래플랫폼²⁹⁾ ‘IP-Market’을 통해 거래가 성사된 사례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2018년 초까지 모든 분야를 통틀어 IP-Market을 통해 성사된 전체 거래사례는 약 4,000여 건에 불과하였다.³⁰⁾

그 외에 지식재산 가치평가 결과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증용 기술평가 비용지원사업” 등이 있는데,³¹⁾ 그 경우 지식재산 가치평가 결과 정보를 제출받은 기관이 그 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

가치평가사업(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를 확인할 수 있다. ;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086325, 최종접속 2023.7.18.

- 28) 2020.9.4. 제2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특허청이 발표한 “지식재산 가치평가체계 개선방안” 참조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 동향정보 게시판에서 재인용. ; https://www.kiip.re.kr/ipmap/board/trend/view.do?bd_gb=db&bd_cd=1&bd_item=0&po_item_gb=&po_cate_=tc_D¤tPage=102&po_no=19909, 최종접속 2023.7.19.

- 29) <https://ipmarket.or.kr/>, 최종접속 2023.7.19.

- 30) 이승훈, 「국가지식재산거래 플랫폼 IP-Market」, 「발명특허」, vol.462, 한국발명진흥회, 2018. ; https://www.kipa.org/webzine/vol462/sub03_01.jsp, 최종접속 2023.11.20.

- 31)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457호 2023년 보증용 기술평가 비용지원사업 공고 4면에서는 신청기업과 평가기관간의 별도계약 이후 신청기업 보유 기술을 대상으로 기술평가기관에서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기술가치평가 보고서를 한국산업 기술진흥원 및 신용보증기금 등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

http://www.motie.go.kr/common/download.do?fid=bbs&bbs_cd_n=6&bbs_seq_n=68586&file_seq_n=1, 최종접속 2023.11.30.

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4)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기간 및 비용

지식재산 가치평가에는 대략 3~6주의 기간이 소요되고,³²⁾ 평균적으로 약 1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³³⁾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에는 그 평가의 목적이나 대상 또는 방법 등에 따라 상당한 정도의 편차가 발생하며, 정보통신기술과 같은 고도로 전문적인 분야의 지식재산가치를 상당한 신뢰도가 보장될 수 있도록 심층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당 보통 8~12주 동안 2~3 천만원이 소요” 될 정도로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³⁴⁾

(5)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신뢰성

지식재산 가치평가는 감정평가사³⁵⁾ 또는 변리사³⁶⁾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

32) 현재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식재산담보대출 목적 가치평가의 경우에 그러하다. ; 한국금융위원회 2018년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 종합대책 (요약).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Id=BBSTY1&upperNo=73449&fileTy=ATTACH&fileNo=4>, 최종접속 2023.11.20.

33) 김경종 기자, 기술가치평가제 시행 4년... 실적 33건 그쳐 저조, 대한전문건설신문 2021.12.17. 자 뉴스기사. ;

<http://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223644>, 최종접속 2023.11.20.

34)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홈페이지. ; 기술가치평가 지원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이다. ; <https://www.iitp.kr/file/download.it?seq=1708>, 최종접속 2023.11.20.

35) 감정평가사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36) 변리사법 제2조. ; “감정”의 대상과 범위가 불분명하여 변리사의 지식재산 가치평가 업무 수행이 위축될 수 있다는 문제 제기 등에 따라 변리사법 일부개정 법률안(2022년 12월 6일 의안번호 제2118695호로 제안된 법률안)에서는 변리사의 감정 업무의 범위에 산업재산권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평가하는 것이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하려 시도하기도 하였다.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P2Y2W1X1W2B2T1M3R4W7F5Z7K1F5X3, 최종접속 2023.7.21.

며,³⁷⁾ 주로 부동산 가치의 감정평가 역량을 확인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교육 및 시험이 이루어진다. 이로 인해 그 시험과목에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관한 과목은 물론이고 지식재산 자체에 대한 과목도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표 5〉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과목 현황³⁸⁾

구분	시험과목
제1차 시험	1. 「민법」 중 총칙, 물권에 관한 규정 2. 경제학원론 3. 부동산학원론 4. 감정평가 관계 법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중 지적에 관한 규정, 「국유재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등기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5. 회계학 6. 영어
제2차 시험	1. 감정평가 및 보상 법규(「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2. 감정평가이론 3. 감정평가실무

한편, 변리사 자격시험은 특허청장이 실시하고,³⁹⁾ 변리사는 그 제도 도입 시부터 산업재산권에 관하여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해 하여야 할 사항의 대리사무가 그 주된 업무로 전제되어 있었기 때문에,⁴⁰⁾ 변리사 자격시험의 과목은 주로 응시자의 과학기술 지식을 평

37)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38)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39) 변리사법 제4조의2 제1항.

40) 1961년 제정 변리사법(법률 제864호) 제2조에서 “특허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할 사항의 대리”를 변리사 수행사무의 큰 축으로 규정하였던 이래 변리사가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사무는 전통적으로 산업재산권 출원 및 산업재산권 관련 심판과 그 심결에 대한 불복소송의 대리사무였다.

가하고 산업재산권법 포함 재산에 관한 실체적·절차적 법률에 관한 이해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검증하기 위한 취지의 과목은 그 시험과목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표 6〉 변리사 자격시험 과목 현황⁴¹⁾

구분		시험과목
제1차 시험		1. 산업재산권법(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및 조약을 포함한다) 2. 민법개론(친족편 및 상속편은 제외한다) 3. 자연과학개론 4. 영어
제2차 시험	필수	1. 특허법(조약을 포함한다) 2. 상표법(조약을 포함한다) 3. 민사소송법
	선택 (택1)	1. 디자인보호법(조약을 포함한다) 11. 반도체공학 2. 저작권법(조약을 포함한다) 12. 제어공학 3. 산업디자인 13. 데이터구조론 4. 기계설계 14. 발효공학 5. 열역학 15. 분자생물학 6. 금속재료 16. 약제학 7. 유기화학 17. 약품제조화학 8. 화학반응공학 18. 섬유재료학 9. 전자기기학 19. 콘크리트 10. 회로이론 20. 철근콘크리트공학

특허청장 지정 발명의 평가기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지정 기술 평가기관의 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잠재적 수요는 아직까지 뚜렷하게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나, 지식재산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위 기관들 소속 감정평가사와 변리사들이 단기간에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실무상 경험을 충분히 쌓는 것은 쉽지 아니한 것이 현실이라 할 수 있다.

41) 변리사법 시행령 별표 1.

(6) 지식재산 가치평가 결과의 검증

지식재산거래를 목적으로 거래당사자 간 자발적 합의에 따라 자율적인 지식재산 가치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복수의 가치평가 기관을 통하여 최소 2회의 가치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식재산거래를 행할 때에도 보통은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 거래에서와 마찬가지로 매수인(또는 실시허락을 구하는 자)과 매도인(또는 실시허락을 하여주려는 자)이 각자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의뢰하여 각 평가결과 간의 차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기준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각 평가결과 간의 차액이 큰 경우에는 양자 공동으로 제3의 기관에 다시 한 번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의뢰하여 그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특히 지식재산거래가 세법⁴²⁾ 또는 공정거래법상⁴³⁾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복수기관에 의한 복수감정평가가 불가피한 의무사항이 된다. 반면에 적정할 것으로 보이는 지식재산거래 대가를 공적 기관이 일방적으로 거래 예정자들에게 제시하는 경우라든지, 지식재산금융 목적으로 지식재산 가치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 등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치평가가 단 1회 수행되기 때문에 그 객관성이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여지가 있다.

4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5항.

4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9호 가목. ; 대개의 경우 스스로 의뢰하여 작성된 하나의 지식재산 가치평가 보고서로는 지식재산이 무상으로 제공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규제기관에 입증하기에 불충분하다. 따라서 많은 기업집단들은 계열사 간 자산거래 시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그 평균액으로 거래대가를 정하도록 하는 내부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 2021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롯데건설, 2021, 138~139면.

IV. 지식재산 가치평가 활성화 저해요소 및 해결 방안

1. 지식재산 가치평가 활성화 저해 요소

(1) 가치평가 비용과 수행기관 지정제도 관련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지식재산의 가치평가를 활용할 수 있는 영역, 즉 가치평가의 목적은 다양함에도 높은 평가비용으로 인해 그 활용가능한 모든 영역에서 가치평가가 활발하게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특정 기술에 특화된 공공 평가기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가치평가 서비스 품질 경쟁 없이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많은 평가기관들이 정부지원금 액수에 맞는 수준으로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는 염려와 신뢰 부족이 생길 수 있다.

정부 지원사업으로 인해 가치평가 사례가 축적되어 가고는 있지만 한정적 예산으로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원금의 축소 또는 지원건수의 제한이 있게 된다. 이는 보다 더 엄격하게 균형잡힌 접근을 통하여 정밀한 평가결과를 도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거래목적의 지식재산 가치평가에는 정부 지원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적게 이루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2) 지식재산 가치평가 데이터 활용 관련

지식재산 가치평가 자체가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한 현실에서, 정부 지원사업이나 기타 공적 사업을 통한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경우에도 모든 평가 결과와 관련된 데이터가 모아져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지식재산 가치평가 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를 수집한 기관이 다른 기관에 그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상 명시적 근거가 없는 때에는 데이터를 한 곳에 축적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3) 전문가 시험 및 교육 관련

과학기술과 지식재산 관련 법령, 시장과 기업 등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관계된 폭넓은 분야의 이해도를 검증받은 자격사가 우리나라에는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여 지식재산 가치평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끌어내기 어렵다. 감정평가사나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도 지식재산 가치평가 업무에 종사하려는 자가 실제로 단기간에 충분한 실무경험을 쌓는 것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매우 어려운 일이다.

(4) 지식재산 가치평가 결과 검증방법 부재 관련

위와 같이 부실한 가치평가의 위험성이 있는 상황임에도 거래목적의 자발적, 자율적 가치평가에서와 달리 정부지원 하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지식재산 가치평가는 단 1회의 평가만이 이루어질 뿐이고 복수 평가에 의한 교차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5) 세법과 지식재산 가치평가 관련

특허 등 지식재산도 재산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⁴⁴⁾ 상속 기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어⁴⁵⁾ 지식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에 따르는 세액을 신고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세액이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이때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등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최우선적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며, 이때에 감정은 1회만으로 족하지만, 만약 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44) 우리나라 법제는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 및 예술가 등이 창출하는 결과물을 지식"재산"으로 규정하여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 지식재산기본법 제2조 제1호.

45) 특허법은 특허권을 이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제99조 제1항),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하여도 특허권 이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제101조 제1항 제1호), 지식재산이 상속 기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에 따라 시가를 산정한다.⁴⁶⁾ 종래에는 감정평가법인만이 위와 같은 감정평가를 수행할 수 있었으나,⁴⁷⁾ 과도한 감정평가비용을 유발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감정가액이 5억 원 이하인 자산에 대하여는 사무소를 개설한 개인 감정평가사도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⁴⁸⁾

이와 같이 세법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의 감정은 감정평가법인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특허청장 지정의 발명평가기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지정 기술평가기관에 의해 이루어진 지식재산 가치평가 결과는 세법상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기술거래나 지식재산 금융 등의 목적으로 지식재산의 가치평가를 특허청 지정 발명평가기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기술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하였더라도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해야 하거나 지식재산의 증여 또는 상속의 이슈가 있는 때에는 반드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 지식재산 시가 평가를 다시 의뢰하여야만 한다. 이는 납세자인 지식재산권 보유자 입장에서는 가치평가에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는 부담이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사업의 승계를 계획 중이거나 특수관계인 사이에 지식재산 거래가 필요한 개인 및 법인 등은 세무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특허청 지정 발명평가기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기술평가기관에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의뢰하는 것마저 포기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⁴⁹⁾

46)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

47)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법인세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기 이전까지 그러하였다.

48) 개정이유서 주요내용 자목.

49)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주된 수요층이라 할 수 있는 법인의 경우 중소기업 대표이사과 법인 간 지식재산거래가 종종 발생하고, 대기업은 일부 사업분야를 분

2. 지식재산 가치평가 활성화 저해 요소에 대한 해결방안

(1) 데이터의 수집 및 공개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평가에 필요한 기본 데이터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어야 그 결과가 합리적이라는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신뢰성을 기초로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가치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데이터 축적을 위해서는 거래 사례를 수집하여야 하는데 기업 등 민간영역에서의 가치평가 사례는 거래조건과 로열티율, 할인율 등이 어떻게 책정되었는지의 정보가 쉽게 공개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공공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가치평가의 기본 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는 작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현재 가치평가 기관별로 가치평가 데이터가 산재되어 있는데 이들 데이터를 모아서 평가항목의 표준화 및 통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이와 함께 산업별 성장률 및 업종별 로열티율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주기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가치평가 사례의 축적을 통해 평가자가 임의로 적용한 추정요소를 수정하거나 최소한으로 줄여 나가야만 결국 중장기적으로 지식재산 가치평가가 어느 영역에서나 보편적으로 활용가 능해 질 것이다.

가치평가를 위한 기본 데이터의 공개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가치평가 활용 확대에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으로써 가치평가 관련 정부 지원사업의 수혜기업 선정시에 지식재산 가치평가 데이터의 공개를 조건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국비지원을 받은 사업의 경우 실시료율 등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거나, 공개에 따르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할하여 사회사를 설립한 뒤 지식재산을 공유하거나 실시 또는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가치평가 비용이 기업 및 개인이 부담하기에 만만치 않은 큰 비용이지만 비용의 문제는 가치평가 활성화에 저해하는 하나의 요소일뿐임을 감안할 때 가치평가 비용을 낮추거나 정부의 지원을 늘리는 것이 가치평가 활성화의 궁극적인 수단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가치평가 비용문제도 역시 평가사례의 축적과 데이터의 공개가 이루어지면 완화되거나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2) 가치평가 전문인력 강화 및 신뢰성 확보

가치평가기관은 공공 및 민간이 수행하는 현재의 방식을 유지하더라도 민간의 가치평가를 확대하는 것이 가치평가를 활성화하는 데에는 더 바람직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가치평가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민간기관에서의 가치평가 결과를 정기적으로 리뷰하고 품질의 강화 체계가 마련된다면 보다 빠른 속도로 가치평가의 이용이 확대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3) 세법상 인정되는 가치평가 기관의 범위 확대

세법 규정과 관련하여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활성화가 저해되고 있는 이유 중 핵심적인 것은 세법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일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지식재산 가치평가 활성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선결과제라 할 수 있다.

세법상 유효한 자산시가의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기관 범위는, 그 평가대상에 제한이 가해지기는 하지만, 2018년에 이미 감정평가법인에서 개인 감정평가사도 가능하도록 한 차례 확대된바 있다. 당시에 그 확대 논리는 납세자의 비용부담을 완화시키고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함이었던바, 동일한 논리로 지식재산에 한해 세법상 유효한 시가의 감정을 특허청 지정 발명평가기관 또는 산업

통상자원부 지정 기술평가기관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해법은 아니라고 볼 것이다.

(4) 기업인증제도를 이용한 지식재산 가치평가 활성화 방안

정부의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로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추가하는 입법 역시 고려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는 기업이 외부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또는 주주 기타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임의로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만약 정부인증을 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로 지식재산 가치평가가 요구된다면 가치평가에 대한 수요는 크게 증가하게 될 것이라 생각된다. 정부의 지원 대상을 선별하기 위한 기업인증 제도는 그 종류가 대단히 많으므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이라 한다)상의 벤처기업 인증 제도에 집중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벤처기업의 요건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나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의 투자금액의 합계 및 기업의 자본금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기업이어야 하고,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이어야 하는 등, 그 요건을 벤처기업법 제2조의2에서 정하고 있다.

벤처기업의 요건 중 벤처기업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사업의 성장성 평가기준은 제품 및 서비스의 경쟁력, 시장의 크기 및 전망 등인데⁵⁰⁾ 이들은 모두 지식재산의 가치에도 반영되는 요소들이다. 그리고 기술의 혁신성 및 사업의 성장성 평가기준은 기술의 우수성, 제품 및 서비스의 경쟁력, 시장의 크기 및 전망 등으로 구성되어⁵¹⁾ 이 또한 지식재산의 가치에 반영되는 요소들이다. 그런

50) 벤처기업법 시행령 제2조의3 제8항.

데 여러 평가지표 중 “지식재산권 보유현황”에 관한 지표는 창업3년 미만의 신규 신청기업의 “혁신성” 평가에서만 고려하도록 하고 있고 “성장성” 평가요소로는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며, 창업3년 이상 신청기업이나 재확인 신청기업 등에는 “지식재산권 보유현황”이 전혀 평가지표로서 고려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벤처기업 인증 시에 지식재산의 시장가치는 성장성 평가에서 거의 고려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며, 게다가 지식재산 관련 요소는 “지식재산 보유현황”으로 10%의 비율로만 고려될 뿐이어서, 이는 벤처기업의 성공 내지 성장에 있어서 지식재산이 갖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에 매우 낮은 비율이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벤처기업 확인 시의 혁신성 및 성장성 평가 요소에 지식재산 가치평가가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나 중소벤처기업부고시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보유 지식재산의 건수에 따른 정량적 평가도 여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현재 지식재산 관련 요소를 평가기준에 포함하지 않고 있는 “성장성” 부문에 “보유 지식재산의 가치”라는 중분류 항목을 신설하고 그 지표로서 “공신력 있는 지식재산 가치평가기관에 의해 평가된 지식재산의 가치”를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기업가치평가에서 지식재산의 반영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따라 S&P 500 우량기업의 시장가치평가에서 지식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기준 84%까지 증가한⁵²⁾ 현실을 고려할 때에 벤처기업 확인 요소로서 지식재산 관련 요소를 단지 10%만 반영하는 것은 다소 문제라고 할 것이다. 지금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지식재산 관련 요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만약 다른 평가요소의 반영비율 축소가 여의치 않은 경우라면, 최소한 지

51) 벤처기업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1항.

52) 전주언 외, “기술개발형 중소기업의 IP 활용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 균형성과평가제도를 중심으로”, 「지역산업연구」, 제43권 제2호,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2020, 304면.

식재산 관련 요소 중 일부, 예컨대 지식재산 보유 건수나 지식재산 가치평가액 중 일부를 기본평가요소 외의 추가 평가요소로 두거나 그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도⁵³⁾ 강구될 수 있을 것이다.

(5)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품질관리 강화 및 상위 컨트롤타워 설립

현재 개별 법령에서 지식재산의 가치평가를 규정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평가기법 개발 및 고도화, 평가전문가의 양성에 관한 내용이어서 이와는 별개로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개별 평가기관의 노하우에 의지하여 지식재산의 가치를 평가하고 평가에 이용된 조건 등이 대중에게 공개가 되지 않고 있어 가치평가 결과에 대한 일반의 신뢰성이 낮은 게 현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 평가기관별로 산재되어 있는 가치평가 데이터를 한 곳에서 모아 이를 통계화하여 주기적으로 공개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이는 일정한 권한을 부여받은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현재 이러한 내용의 권한을 부여받은 공공기관이 없는 실정으로 관련 기관 설립과 평가결과의 검수 및 검증의 업무, 통계화 및 공시의 업무 등 구체적인 업무범위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2023년 7월 13일 발명진흥법에 규정된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품질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지식재산평가관리센터’가 출범하였다. 지식재산평가관리센터는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지식재산 가치평가와 관련된 모든 업무 중에서 “품질관리”에 대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⁵⁴⁾ 그런데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품질관리가 내

53) 그 경우 실질적으로 평가요소 비율의 총계는 100%를 초과하게 될 것이다.

54) 평가관리센터의 업무는 ① 지식재산평가와 관련된 연구·교육 및 홍보, ② 평가기준의 수립 지원, ③ 평가기법의 개발·보급, ④ 타당성조사 및 표본조사, ⑤ 평가정보체계 구축·운영, ⑥ 발명 등의 평가 수요의 조사 및 분석, ⑦ 발명 등의 평가 관련 정보의 공동 활용 및 확산, ⑧ 발명 등의 평가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⑨ 그 밖에 특허청장이 발명 등의 평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

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즉, 발명진흥법은 품질관리를 위한 업무 중 하나로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타당성조사 및 표본조사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때 타당성 및 표본 조사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우선 타당성조사와 관련하여, 타당성조사는 가치평가보고서를 사후적으로 리뷰하는 것을 시사하는바, 기준시점이 과거인 가치평가 결과의 타당성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은 매우 곤란한 경우가 많다. 결과보고서의 사후리뷰는 대체로 결과 자체의 정확성 내지 신뢰성에 대하여라기 보다는 결과에 이르는 과정을 큰 틀에서 살펴보아 절차적 기준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가치평가의 수요자들은 평가절차가 어떠했는지보다 평가결과가 정확하고 신뢰할만한지 여부에 더 관심이 많을 것이다.

나아가, 발명진흥법은 직권으로 또는 국가등이나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⁵⁵⁾ 특허청장은 “국가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요청을 한 경우에” 타당성조사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여 그 결과의 제공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⁵⁶⁾ 이는 법을 운용하기에 따라서는 가치평가 결과의 제공 범위를 좁힐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 보인다. 비록 시행령에서는 결과를 통지하여야 할 자의 범위를 평가기관, 평가의뢰자 및 타당성조사 요청자에까지 확장하고는 있지만,⁵⁷⁾ 법률의 수권조항 자체의 문구에 비추어 통지 대상 모두에게 동일한 정도

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 발명진흥법 제31조의6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 및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4조의6 제4항 제1호부터 제4호.

55) 발명진흥법 제31조의4 제1항.

56) 발명진흥법 제31조의4 제3항.

57)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4조의4 제5항. 좁게 해석하면 법률의 수권범위를 감안할 때에 시행령상의 “타당성조사 요청자”는 “국가등”에 타당성조사 요청자인 경우로 한정된다고 하여도 법리적으로 가능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로 타당성조사 결과 및 결과의 도출 이유를 상세하게 제공할 필요는 없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어 보인다.⁵⁸⁾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타당성 조사가 지식재산 가치평가 품질향상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고 하기는 쉽지않아 보인다. 최소한 절차적 측면에서라도 지식재산 가치 평가에 대한 품질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타당성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고, 조사결과 외에 결과 도출의 과정 및 이유를 포함하는 보고서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그 보고서 제공 대상에 평가기관 및 국가등 외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조사를 요청한 자도 포함시키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표본조사와 관련하여, 발명진흥법 시행령은 표본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표본조사 결과를 “해당 평가기관”에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⁵⁹⁾ 여기서 표본조사를 통한 피드백이 그 표본으로 추출된 평가결과서를 작성한 해당 평가기관에만 주어진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도개선의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잘 작성된 평가결과서가 “모범사례”로서 모든 평가기관에 공유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문제가 있는 평가결과서의 경우에도 그 문제의 내용이 어디에서나 발생 가능한 공통적 원인에 기 초한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이 역시 모든 평가기관에 공유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에 법령에서는 개인정보 기타 공유 불가능한 내용의 삭제 등 전처리 절차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표본조사의 조사주기에 대하여는 법령 및 특허청고시에서도 아무런 기준이나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⁶⁰⁾ 심지어 표본의 규모조차

58) 예를 들어 조사 요청자에게 “타당성조사 결과: 타당함”이라고만 통지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경우 조사 요청자 입장에서는 그 타당성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여전히 판단하기 곤란하게 될 것이다.

59)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4조의4 제8항.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결정할 수 있어,⁶¹⁾ 표본조사가 형식적으로 수행되어 지식재산 가치평가 관련 제도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발생한다. 즉, 잘 작성된 평가결과서만 표본으로 추출되거나, 그와 반대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만 표본으로 추출되는 등, 전체를 대표하기 힘든 작은 규모의 표본추출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데 이는 통계처리를 전제로 하지 않는 경우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표준의 규모에 대한 결정과 관련한 최소한의 기준을 법령에 명시하는 개선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식재산평가관리센터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품질관리” 분야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지식재산 가치평가 활성화를 위한 모든 분야를 통괄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는 지적이 가능할 것이다. 예컨대, 지식재산평가관리센터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수요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이 가능하지만,⁶²⁾ 이를 넘어서 그 수요가 부족하고 수요 확대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까지 도출된다 하여도 그 방안을 스스로 집행하거나 다른 기관에 집행하도록 명할 수 있는 법적 권한까지 갖고 있지는 아니하다. 또한 지식재산 가치평가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데,⁶³⁾ 이때 어떠한 자격이나 경력 및 교육배경을 갖춘 자를 전문인력으로 볼 것인지, 양성하여 배출할 전문인력의 수 및 평가기관에 요구할 전문인력의 수 또는 확보율 등 전문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와 같은 관련 문제들을 스스로 직접 처리할 법률상 권한까지는 부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서비스의 공급자 및 수요자, 그리고 지식재산 가치평가서비스 그 자체에⁶⁴⁾ 대한 각각의 컨트롤타워를 세우고, 이들을 모두 아우르는 상

60) 특허청고시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 업무수행지침 제5조 제2항.

61) 특허청고시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 업무수행지침 제7조.

62)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4조의6 제4항 제1호.

63)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4조의6 제4항 제3호.

위 컨트롤타워 기능을 어느 한 기관이 맡도록 하는 것이⁶⁵⁾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V. 결론

최근 기업들은 지식재산의 활용을 시장가치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기업가치 창출에 대한 기여도를 한층 더 높이기 위해 지식재산을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전략에서 지식재산의 중요도가 점점 커짐에 따라 지식재산의 정확한 가치평가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⁶⁶⁾ 우리나라는 지식재산 가치평가가 아직까지 금융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는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식재산거래 사례를 축적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모범사례를 활발히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치평가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것이다.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필요성에 모두가 공감하는 만큼 효율적인 평가방법 마련과 함께 활성화의 장애요소 해결을 위한 노력에도 속도를 낼 필요가 있을 것이다.

64) 지식재산평가관리센터가 이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65) 특허청장이 직접 그러한 최상위 컨트롤타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지식재산 가치평가 관련 업무의 외부 위임 기조를 고려할 때 발명진흥회 등 특허청 산하 기관에 해당 업무를 전담할 기관을 신설하고 그 업무를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을 것이다.

66) 한국부동산연구원, 지식재산권 감정평가기준 마련 연구, 2022, 20면.

〈참고 문헌〉

〈논문〉

이승훈, “국가지식재산거래 플랫폼 IP-Market”, 「발명특허」, vol.462, 한국발명진흥회, 2018.

전주언 외, “기술개발형 중소기업의 IP 활용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 균형성과평가제도를 중심으로”, 「지역산업연구」, 제43권 제2호,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2020.

조용순, “콘텐츠 제작을 위한 자금조달 관련 법률에 대한 검토”, 「정보법학」, 제23권 제2호, 정보법학회, 2013.

〈보고서〉

일본 지적재산추진계획 및 콘텐츠가치비즈니스모델에 관한 연구조사회, 콘텐츠평가비즈니스모델에 관한 조사연구 보고서, 2004.

한국부동산연구원, 지식재산권 감정평가기준 마련 연구, 2022.

〈인터넷 자료〉

김민정 기자, [단독] 대법원, 지식재산권 가치평가 기준 도입 검토… “기술이 가진 가치 제대로 평가”, 조선 비즈 2022.6.27.자 기사, 최종접속 2023.11.20.

법원행정처, 지식재산권의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제안요청서, 2022.6. 파이낸셜뉴스, [이동규의 컨버전스] 소프트웨어 가치평가의 특이점 인정해야[수담활론], 2023.9.3.자 기사, 최종접속 2023.11.20. ifs POST, ‘데이터 가치 평가기관’ 지정의 의미와 과제, 2023.9.5., 최종접속 2023.11.20.

WIPO, IP Valuation ;

<https://www.WIPO.int/tools/en/gsearch.html?cx=016458537594905406506%3Ahmturfvwzzq&cof=FORID%3A11&q=ip+Valuation#gsc.tab=0&gsc.q=ip20Valuation&gsc.page=1>, 최종접속 2023.11.20.

〈국문 초록〉

국내에서 지식재산의 가치평가는 금융 분야에서 활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금융 목적 외에는 그 활용이 미미한 상태이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목적을 크게 지식재산 거래(Transaction), 지식재산권 집행(Enforcement of Right), 내부적 활용(Internal Use), 기타(Others, 세무, 파산/청산 등)로 분류하고 있어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실제 법원의 소송사건에도 지식재산의 가치평가가 쟁점이 되지만 지식재산 가치평가나 실시료율 산정의 어려움으로 실무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식재산 가치평가가 그 필요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용되지 못하는 것은 특히 특허, 디자인, 상표 등 산업재산권은 각각 다른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기때문에 기술 내용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필요한 데에다, 평가조건에 대한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로 가치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신뢰성 부족으로 가치평가의 활용영역 확장에 어려움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지원사업의 수혜기업 선정시 지식재산 가치평가 데이터 공개를 조건으로 기업을 선정하는 방법, 세법상 인정되는 가치평가 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에서 발명의 평가기관 또는 기술평가기관도 시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벤처기업인증을 위한 평가요소에 지식재산의 가치평가가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성도 있을 것이다. 아울러 개별 평가기관별 산재되어 있는 가치평가 데이터를 한 곳에서 모아 이를 통계화하여 주기적으로 일반에 공개함으로써 가치평가가 보다 많은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주제어: 지식재산, 가치평가, 가치평가기관, 가치평가데이터, 기업인증제도

〈Abstract〉

A Study on Plans to Expand the Utilization Area of Intellectual Property Valuation in Korea

CHANG, Jae-Won*·LEE, Myeong-Hui**

In Korea, IP valuation is increasingly being used in the financial sector, but its use outside of financial purposes is minimal.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sation (WIPO) classifies the purpose of IP valuation as Transaction, Enforcement of Right, Internal Use, and Others (taxation, bankruptcy/liquidation, etc.), which shows that there are various areas where IP valuation can be used. In actual court cases, the valu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is also an issue, but there are difficulties in practice due to difficulties in valuing intellectual property and calculating royalties. In particular, industrial property rights such as patents, designs, and trademarks are affected by different factors, so it is necessary to have a systematic understanding of the technical content, and the valuation is carried out without validation of the valuation conditions, so it is difficult to

* Representative Attorney of Haehwa Law/Patent Attorney

** Senior Researcher of 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Ph.D. in Law

expand the use of valuation due to lack of reliability.

In order to promote intellectual property valuation, Korea needs to find a way to select companies under the condition of disclosing intellectual property valuation data when selecting beneficiaries of government support projects, and to expand the scope of valuation agencies recognised under the Tax Act so that invention valuation agencies or technology valuation agencies can also evaluate from those limited to appraisal companies. It will also be necessary to amend the relevant laws to include the valu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as an evaluation factor for venture company certificatio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ollect the scattered valuation data of valuation agencies in one place and make them statistically available to the public on a regular basis, thereby laying the foundation for valuation to be used in more areas.

key words: Intellectual Property, Valuation, Valuation Agency, Valuation Data, Corporate Certification System